제1조 (명칭)

이 기관의 명칭은 진주의료기라고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제 규정과 보건복지법에 따른다.

제3조(사업목적)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 노인에게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진주의료기

② 소재지 : 충남 서천 관내에 둔다.

제5조(이용계약기간과 계약목적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1등급- 5등급) 인정서내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인정기간에따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장기요양법에 따라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의 편의 및 자립적 생활을 도와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고충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

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복지용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7조(신원인수인의권리 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의 시설장에게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변경절차는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급여종류

판매제품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경사로(실내용) 욕창예방매트리스(판매 대여 모두가능)

대여제품 : 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실외용)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대여 판매 모두가능)